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8. 9. 12 규칙 제 973호
개정 2002. 7. 23 규칙 제1161호
개정 2005. 7. 28 규칙 제1327호
개정 2008. 10. 9 규칙 제1577호
개정 2012. 3. 15 규칙 제20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의 구성원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성평등상담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란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3. “사건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학칙과 용역계약 등의 적용을 받는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적용 기준시점은 사건 발생 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건의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건의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평등상담센터**

제5조(설치) 본교 구성원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며,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과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성평등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센터에 상담센터장과 1명 이상의 전임상담원을 둔다.

② 상담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상담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센터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센터를 총괄한다.

④ 전임상담원은 상담심리 혹은 여성학 관련 전공자로서 **성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상담센터에 상담센터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기구의 추천을 받은 3인 이상의 학생대표와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여성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담센터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상담센터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조사위원회의 구성
3. 상담센터의 예산과 결산
4. 상담센터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하며,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센터장이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조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상담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상담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사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제10조(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센터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상담센터가 아닌 학내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상담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과 조사·보고) ① 운영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담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업무 개시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하고,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① 운영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면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센터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형벌에 해당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

③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상담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973호, 1998. 9.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학생생활연구소의 “성폭력상담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1161호, 2002. 7.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성폭력상담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1327호, 2005. 7.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성폭력상담실과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이 규정에 의해 성폭력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 임명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1577호, 2008. 10.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44호, 2012.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